

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10-15

서울고등법원

제 7 행정부

판 결

사 건 2023누72778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

원고, 항소인¹⁾

1. A
2. B
3. C
4. D
5. F
6. G
7. H
8. I
9. K노동조합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, 담당변호사 박현익

피고,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

피고보조참가인 L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세종, 담당변호사 김종수, 이현송

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. 11. 3. 선고 2022구합76306 판결

변 론 종 결 2024. 6. 20.

1) 제1심 공동원고 E, J도 항소했지만, 이 법원 계속 중이던 2024. 6. 17. 각 항소를 취하하였다.



판 결 선 고 2024. 7. 18.

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. 7. 4.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M/N(병합) L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,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(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).

○ 제1심 판결 제4쪽 표 안 제9행의 "2009. 9. 1."을 "2007. 9. 1."로 고친다.

2. 추가 판단



원고들은, 참가인이 최소 근무인원을 26명으로 산정한 것에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갑 제66호증, 을가 제6, 39, 54호증, 을나 제9, 2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단체협약 제9조는 '노동력을 증가 또는 삭감한 생산계획, 판매계획, 작업방법 및 봉사방법 등의 결정을 포함하여 호텔의 운영과 노동력의 적절한 사용은 경영주의 권한이며 기능에 속한다.'고 정하고 있고, 기업의 잉여인력 중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(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1다60193 판결 등 참조)인 점, ② 참가인 측은 2021. 9. 16. 개최된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'식음 관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약 30명이고, 시설 관련 직원이 약 10명인바, 식음 사업이 중단되었고 시설 부문을 도급 줄 예정임을 고려하면, 일단 약 40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한다. 여기에 식음 사업과 직·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력들도 존재한다.'고 언급하였고, 당시 참가인의 전체 근로자는 67명이었던 점, ③ 이후 참가인은 2021. 10. 1. 시설팀과 식음사업부문(조리팀, 식음팀, 컨세션사업팀)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함에 따라 식음사업 부문 직원들의 직무가 사라지게 되자 그 중 11명들을 프론트 직무 보조 헬퍼 및 환경관리 직무 보조 헬퍼로 배치전환하기도 한 점, ④ 2021. 9. 30.경부터 2021. 10. 15.경까지 희망퇴직한 근로자는 23명으로, 조직개편과 배치전환 이후의 유희인력 규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⑤ 참가인의 '월별 손익계산서' 자료에 의하면, 2021. 10.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율이 약 285.1%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참가인이 2021. 10. 하순경 최소 근무인원을 26명으로 산정하여 당시 전체 근로자 41명 중 위 26명을 제외



하고 정리하고 대상 인원을 15명으로 제시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구회근

 판사 배상원

 판사 최다은